

소년법개정과 소년사법의 건전한 육성

최 병 각*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에 세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소년사법의 인적·물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강화되었지만, 소년비행에 대하여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이원적 구조로 인하여 소년사법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소년사건의 처리권한에 관한 선의권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졌다. 소년비행을 줄이고 소년사법을 선진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소년법 적용대상의 변경,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혁, 보호처분의 강화 등의 쟁점에 대한 유기적·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소년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1958년 소년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다.¹⁾ 그동안 소년비행에 대하여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이원적 구조를 통하여 소년의 건전육성이념²⁾을 추구하였음에도 모두가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기 어려웠고, 여러 방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근 또다시 소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6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안”)을 내놓았다.³⁾ 2007년 4월 법무부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소년법개정시안(이하 “법무부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열었다.⁴⁾

이 글에서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소년법 적용대상의 변경, 둘째,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혁, 셋째, 보호처분의 강화 등의 세가지 핵심 사항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적절성 여부를 현행 소년법체계와 소년사법실무의 현황 및 전망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소년법 적용대상의 변경

1. 소년연령의 상한

1) 이 밖에 1995년 소년감별소 명칭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하는 개정과 2007년 소년심판규칙에 있던 소년보호사건 기록과증거물의 열람·등사에 관한 내용을 소년법에 규정하는 개정이 있었다.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의 연혁에 관하여 상세히는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42-61면.

2) 소년보호의 법리에 관하여 김기두,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제14권 제1호, 1973, 7면; 정영석, “소년보호와 소년법”, 사법행정, 1970.12., 28-32면, 1971.1., 27-30면.

3)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I):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백서, 2005.6.

4) 법무부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2007.4.20.

법무부안⁵⁾은 소년법 적용대상인 소년의 연령상한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고 있다(제2조, 제7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51조). 법원안도 동일하다.

여기에서 소년연령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소년인구(10세 이상 20세 미만)의 현황(2005년)

연령	인구(천명)	비율(%)
10	688	10.5
11	687	10.5
12	699	10.6
13	698	10.6
14	662	10.1
15	632	9.6
16	617	9.4
17	606	9.2
18	608	9.3
19	638	9.7
합계	6,535	1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만약 소년법상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게 되면 위의 <표 1>에서 2005년 기준 10세 이상 20세 미만인 6,535,000명 가운데 19세인 638,000명(9.7%)을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년연령의 상한인하와 관련하여 “최근 소년의 발육상태를 감안하면 과거에 비해 정신적·육체적 발육의 상태가 빨라졌”다는 점이 논거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⁶⁾ 그러나 예전의 19세에 비하여 요즘의 19세가 신장

5) 법무부안이 가장 최신의 개정안이고, 법원안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개정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법무부안을 주된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

6) 원혜옥, “소년법개정안 개요”,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10면.

이나 체중과 같은 육체적 측면에서 발육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과연 자아통제력의 향상 등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측면에서의 성숙정도가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다. 설령 요즘의 19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빨리 성장하여 이미 성인이 다 되었다거나 적어도 예전의 20세의 수준에는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소년법에서 말하는 “건전한 육성”의 대상에서 배제시켜 더 이상 보호처분도 형벌완화도 고려하지 말자는 것이 타당한 주장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민법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에서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소년법상 소년연령도 이에 맞추어 19세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민법상 미성년자는 언제부터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유해 매체물·약물·업소·행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대상인 반면,⁷⁾ 소년법상 소년은 범죄(비행)를 이유로 보호처분·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각각 별개의 차원에서 규율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연령의 통일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한편 소년법 중 18세-19세의 비율을 감안하여 소년법 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전체 소년범죄의 발생건수 중 19세의 범죄율이 높거나 낮다고 하여 소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도무지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굳이 따지자면 실무에서 소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19세의 사건은 다른 연령층의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는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년사건처리실태를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소년법의 연령층별, 범죄유형별 현황은 다음의 <표 2>와 같고,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연령층별 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의 연령층별, 죄명별 현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7) 16세 이상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술/담배 판매 금지연령, 유흥/단란주점 출입 및 고용 금지연령, 비디오방 출입 금지연령, 성인용 영화 관람 금지연령, 성인용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이용 금지연령 등 청소년 보호 연령의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13명(78.8%)이며, 이들 가운데 421명(51.8%)이 만 19세 미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었다는 연구결과는 최인섭/전영실/안경옥/한상훈, 청소년보호연령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16면.

<표 2> 소년법 연령층별, 범죄유형별 현황(2005년)

구 분	계	12세-13세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계	67,478	523 (0.7)	18,761 (27.8)	22,785 (33.7)	25,409 (37.6)
형법범	50,652	198	16,770	17,098	16,586
재산범	26,848	122	10,530	9,727	6,469
(절 도)	22,068	(70)	(9,947)	(8,454)	(3,597)
폭력범	21,009	51	5,718	6,270	8,970
강력범	1,549	7	432	631	479
(강간,성폭력)	752	(4)	(192)	(316)	(240)
과실범	108	14	20	28	46
기 타	1,138	4	70	442	622
특별법범	16,826	325	1,991	5,687	8,823

자료: 범죄분석

<표 3>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받은 소년의 연령층별 현황(2005년)

계	12세-13세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21,135	3,417 (16.2)	6,403 (30.2)	7,991 (37.8)	3,324 (15.7)

자료: 사법연감

<표 4> 소년원 수용소년 연령층별 죄명별 현황(2005년)

구 분	계	12세-13세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20세 이상
계	1,543	83 (5.4)	400 (25.9)	706 (45.8)	331 (21.5)	25 (1.6)
절 도	597	33	180	281	103	7
성폭력	33	0	7	13	13	0
약물남용	11	0	2	5	4	0
상해폭행	197	9	56	102	29	1
협박공갈	7	1	1	2	3	0
강 도	89	5	19	46	18	1
기 타	632	35	135	255	161	16

자료: 법무부 보호국 통계, 범죄백서

위의 <표 2>, <표 3>,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의 경우 18세-19세 소년은 검찰이 처리한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자 67,478명 중 25,409명(37.6%)이고,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21,135명 중 3,324명(15.7%), 소년원에 수용된 1,543명 중 331명(21.5%)에 이르고 있다. 18세-19세 소년은 16세-17세 소년에 비하여 예서 인구율은 19.0% 대 18.6%로 거의 차이가 없는데(표 1), 범죄율은 37.6% 대 33.7%로 오히려 약간 높다(표 2). 반면 보호처분율은 15.7% 대 37.8%이고(표 3), 소년원 수용율은 21.5% 대 45.8%로서(표 4)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에 있어서는 18세-19세 소년이 16세-17세 소년보다 절반 이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에도 18세-19세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원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 짐작되는 이유로는 첫째, 소년법 적용을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고, 둘째, 실무에서 특히 20세에 가까운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보다 형사처분을 우선하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건대 소년법이 반사회성의 제거를 통한 건전육성을 이념으로 한다면 적용대상에서 19세 소년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19세 소년에게도 “소년의 특성”, 즉 “소년의 인격은 형성 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음”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형벌보다 보호처분이 훨씬 적합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19세 소년이면 모두 성인으로 취급하여 형사사건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현행과 같이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제49조 제1항, 제50조) 검사와 형사법원이 사건을 소년법원에 보내어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9세 소년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형벌을 부과할 경우에도 형감경(제60조 제2항), 부정기형(제60조 제1항) 및 가석방요건 완화(제65조)⁹⁾의 혜택을 인정해야 한다.¹⁰⁾ 따라서 소년연령의 상한을

8) 대판 1997.2.14. 96도1241. 동판결에 대한 평석은 최병각, “소년감경의 적용요건과 소송법적 효과”, 형사법연구, 제12호, 463-484면.

9) 우리 소년법 제65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소년법 제66조에 따르면 가석방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전 집행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하면 형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하되, 사형·무기형을 완화된 15년의

인하할 것이 아니라 현행 소년법의 20세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년연령의 하한

법무부안은 소년보호사건의 적용대상인 소년의 연령하한을 현행 12세에서 10세로 인하하고 있다(제4조 제1항 2호, 제38조 제2항). 법원안도 동일하다.

이러한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 기준 10세 이상 20세 미만 6,535,000명 중 10세-11세 소년 1,375,000명(21.0%)을 소년보호사건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표 1>).

소년연령의 하한인하는 현하의 소년법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형벌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자에 대하여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활용하여 사법적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되 그 대상범위를 현행과 같이 12세 이상으로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1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인가 문제이다. 10세-11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첫째, 초발비행의 시기가 빠를수록 상습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 둘째, 비행소년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가 범죄예방에 중요하다는 점, 셋째, 소년범죄가 저연령화하고 있다는 점, 넷째, 학교폭력이 초등학교에서도 심각하다는 점 등을 그 논거로 삼고 있다.¹¹⁾ 그러나 이른바 “소년범죄의 저연령화”는 너무나도 자주, 그야말로 특하면 지적되어 반론의 여지조차 없을 만큼 명백한 사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을 뿐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비록 예전에 비해 좀더 영악해진 저연령층에 의한 끔찍한 범행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1953년

형기나 부정기형의 장기가 먼저 경과하면 그 때 형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성인의 경우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가석방요건으로 하고(형법 제72조),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10년 미만의 남은 형기를 가석방기간으로 함(형법 제73조의2)에 비하여 재판시 소년에 대하여 가석방의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10) 소년상한연령의 인하는 소년법의 기본이념의 후퇴이자 소년법에 대한 형벌강화라고 비판하는 견해는 박미숙, “법무부 소년법개정안 토론회”,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65면.

11) 원혜옥, “법무부 소년법개정안의 개요”, 8-9면.

형법 제정시, 1958년 소년법 제정시 입법자의 근본적인결단을 바꾸어야 할 정도로 중차대한가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위의 <표 2>, <표 3>,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의 경우 12세-13세 소년은 검찰이 처리한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자 67,478명 중 523명(0.7%),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21,135명 중 3,417명(16.2%), 소년원에 수용된 1,543명 중 83명(5.4%)에 이르고 있다. 12세-13세 촉법소년이 14세-15세 범죄소년에 비하여 인구율(21.2% 대 19.7%)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범죄율(0.7% 대 27.8%)은 매우 낮음에도, 보호처분율(16.2% 대 30.2%)은 절반 수준에 이르고 소년원 수용율(5.4% 대 25.9%)도 무시할 수준은 넘는다. 이는 현재 12세-13세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원이 적잖이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실 10세-11세 소년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소년사법의 흠결로 지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 미만자)에 대하여도 소년법원의 관할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¹²⁾ 문제는 그들에 대한 보호처분이 과연 기대되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가, 다른 방안에 비하여 우월한 최선의 방책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느냐이다. 생각건대 아직은 보호처분제도가 소년의 건전육성의 역할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¹³⁾ 낙인의 부작용을 무시할 없음에도 통제망의 확대만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¹⁴⁾ 오히려

12) 박재윤, “비행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 현행 소년사법제도를 중심으로”,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제9집, 1991, 49면; 김영란, “개정 소년법에 대한 일고”,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제7집, 1989, 236-237면; 김기두, “소년법상의 제반 문제점과 개정방향”,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1985, 10-11면; 한상호, “현행 소년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논설집, 제5집, 1981, 266면; 김완섭, “소년법상의 문제점”, 사법연수원, 소년법에 관한 제문제, 법과연수자료, 1979, 515면.

13) 신순갑, “소년법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NGO 입장”,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43면.

14) 특히 10세, 11세의 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견해는 김석병, “비행·일탈청소년 통합 지지체계 구축”,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56면; 최종식, “소년법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소년법학회, 2007년 동계학술회의 자료, 2007.2.23., 15면. 반면 소년원의 신수용인원 중 12세, 13세의 비율이 2005년의 경우 1,543명 중 83명(5.4%), 2006년에는 1,468명 중 61명(4.2%)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소년연령하한을 인하하더라도 그들이 소년원에 대거 송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김용운, “소년법 개정안의 몇가지 쟁점에 대하여”,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소년법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근거한 교육적·복지적 접근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년연령의 기준시점

법무부안은 소년심판 및 보호처분의 적용요건인 소년연령의 기준시점을 현행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검사송치·형사법원이송·보호처분 결정시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2항, 제51조, 제38조 제1항, 제2항). 법원안도 동일하다.

생각건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환경조정과 성행교정을 통한 건전육성을 추구함에 비추어 심판시를 기준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일응 당연하다. 그러나 소년심판절차에서 대상자의 연령이 상한에 근접하고 있는 경우에 사건처리에 걸리는 기간¹⁵⁾의 장단이라는 우연적 사실에 따라 최종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¹⁶⁾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는데 항고절차의 진행중에 성인이 된 경우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할지,¹⁷⁾ 아니면 보호처분의 변경이나 불처분으로 처리해야 할지¹⁸⁾ 다툼이 있다. 그리고 경찰서장, 검사, 형사법원 또는 소년법원으로서 사실상 사건의 성격이나 내용이 아니라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기준삼아 처리절차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¹⁹⁾

74-76면.

15) 소년사건처리기간을 검찰 20일, 형사법원 30일로 단축하고 소년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일과후나 휴일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는 이수현,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상의 문제점과 대안”, 경북대, 법학논고, 제21집, 2004, 98면.

16) 강완구, “우리나라 소년심판제도상의 제문제”, 법원행정처,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8집, 1983, 676면; 나채규, “소년법상 보호처분 활성화방안”,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제8집, 1990, 175면.

17) 나채규, “소년법상 보호처분 활성화 방안”,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제8집, 1990, 175-176면;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행정·소년·비송, 1986, 244면; 이정구, “현행 소년법상 항고제도에 관한 고찰”,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1985, 201-202면; 유진식, 소년법, 육법사, 1982, 371면.

18)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224-226면.

19) 일본의 경우 소년법원은 조사 또는 심리의 결과 대상자가 20세 이상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일본소년법 제19조 제2항, 제23조 제3항), 3개월내에 성인이 될 소년사건은 경찰에 의한 간이송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關力(編), 非行少年はこう扱われる, 有信堂, 1991, 84면.

이로 말미암아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더욱이 보호처분이 원래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수단으로서 성인에게는 부적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소년심판의 대상이 된 범죄소년이 종국결정시에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절차로 보내는 것은 필연성이 없다.²⁰⁾ 소년이 범죄행위를 하였더라도 이것이 소년이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저지른 것으로 기대가능성과 비난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고, 다만 범죄행위에 나타난 반사회성을 제거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시 소년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년으로 저지른 범죄행위를 이유로 이미 성인이 된 자를 소년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년심판대상으로 심리가 개시될 때 소년이기만 하면 종국결정시 성인이 되더라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방안이 된다. 따라서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① 범죄행위시 20세 미만이고 또한 ② 심리개시결정시에도 20세 미만이면 ③ 심리개시후 20세 이상으로 되더라도,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① 범죄행위시 20세 미만이더라도 ② 심리개시 이전에 20세 이상으로 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²¹⁾

4. 우범소년의 배제

법무부안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우범소년을 존치하되 우범사유를 다소 구체화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3호). 즉, 우범사유로 첫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성벽이 있는 자,

20)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에게 보호처분이 부과된 다음에 그 소년이 성인으로 되었다고 해서 보호처분의 집행이 종료하는 것은 아니라 보호처분의 기간(제33조)이 종료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집행을 할 수 있고, 보호처분의 집행되는 중에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제37조)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이미 성인이 된 자에게 새로이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1) 구체적인 입법안은 최병각, “소년심판대상의 연령기준”, 형사정책연구소식, 2000/8, 29면 참조.

둘째,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자, 셋째, 음주소란 또는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범율이 높은 이유는 비행초기단계에서의 보호조치가 미흡한데 원인이 있다”는 진단에 기초하여 “비행초기단계에서의 선도·보호를 통하여 우범소년이 범죄소년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우범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²²⁾

그러나 법원안은 우범소년을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논거로는 우범소년의 “요건이 지극히 주관적, 추상적, 포괄적이어서 현재 죄를 범하지도 아니한 소년을 범죄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보호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체의 자유 등을 억압할 수 있어 소년의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되기” 때문에 우범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²³⁾

생각건대 비록 비행·범죄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조항²⁴⁾을 통한 “결면 걸리는” 식의 통제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우범소년을 공식적으로 사법처리하면 낙인효과로 말미암아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만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검사나 형사법원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범죄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소년사건을 손쉽게 처리하는 편법으로 우범소년임을 내세워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통로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²⁵⁾ 나아가 우범사유 자체가 전근대적인 가부장제에 기초하여 독립된 인격체로서 소년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²⁶⁾ 따라서 국친사상을 내세워 소년법원이 우범소년을 맡아서 처리하기보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²⁷⁾

22) 법무부,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검토의견”,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86-87면.
 23)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I):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백서, 2005.6. 153면.
 24) 심헌섭, “형법과 일반조항”, 손해목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3, 579-597면.
 25) 김완섭, “소년법상의 문제점”, 사법연수원, 소년법에 관한 제문제, 법관연수자료, 1979, 517면.
 26) 미국의 경우 1974년 소년사법및비행예방법(JJDP Act)의 제정에 따라 신분비행소년에 대한 시설내처우를 배제하기 시작했고, 몇몇 주는 신분비행소년을 소년법원의 관할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있다. Bartollas, *Juvenile Delinquency*, 2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9-10면.

III.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혁

1. 통고처분·즉결심판·약식명령·벌금형의 배제

법무부안은 현행 소년법상 필요적 소년보호사건인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소년사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제49조 제1항, 제50조). 이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나 공판절차를 통해 실행 또는 집행유예에 처하는 것보다는 통고처분·즉결심판·약식명령·벌금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간단·용이하고 소년에게도 오히려 유리하다는 점에서 실무의 관행을 법제화한 것이다.

여기서 소년사건처리의 실태를 통계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5>, <표 6>, <표 7>, <표 8>, <표 9>, <표 10>, <표 11>, <표 12>과 같다.

<표 5> 검사의 소년범죄 처리현황(2005년)

구 분	처 리	기 소			불기소			소년 보호	가정 보호	기타
		소 계	구 공판	구 약식	소 계	기소 유예	협의의 불기소			
죄 명	67,478	11,350 (16.8)	2,771 (4.2)	8,579 (12.7)	40,489 (60.0)	33,683 (49.9)	6,806 (10.1)	13,555 (20.1)	10 (0.0)	
절 도	22,068	1,577	1,257	320	14,159	13,494	665	6,071	1	260
강 도	696	197	197	-	149	82	67	338	-	12
강 간	752	208	193	15	264	71	193	267	-	13
상 해	901	147	15	132	589	554	35	159	5	1
폭 행	455	27	6	21	403	63	340	22	1	2
폭처법	19,348	2,335	350	1,985	12,902	10,596	2,306	3,959	3	149
교특법	3,893	1,141	143	998	2,342	699	1,643	383	-	27
도교법	10,732	3,951	53	3,893	5,501	5,129	372	1,198	-	82

자료: 범죄분석

27) 이진국, “소년보호대상의 범위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2006, 108면; 오영근,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02, 10면; 짐승현, “우범소년의 우범사유와 우범성”, 소년법연구, 제1호, 2002, 328-329면. 그러나 우범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최종식, “우범규정의 재해석”, 소년법연구, 제2호, 2007, 92-93면.

<표 6>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2005년)

연령별	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5,511	609 (11.1)	1,247 (22.6)	1,436 (26.1)	1,284 (23.3)	703 (12.8)	232 (4.2)
죄명별	계	폭처법	절도	강도	사기	기타	
	5,511	1,666 (30.2)	2,713 (49.2)	68 (1.2)	17 (0.3)	1,047 (19.0)	

자료: 법무부 보호국 통계, 범죄백서

<표 7> 형사공판사건 처리현황(2005년)

구 분		구 속	불구속
제1심	합 계	59,986	166,532
	소년부송치	1,051	514
항소심	합 계	27,751	30,301
	소년부송치	52	16
상고심	합 계	3,234	8,014

자료: 사법연감

<표 8>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20세 미만자 재판현황(2005년)

합 계	사 형	무기 형	정기형 (실형)	부정 기형	집행 유예	벌 금	선고 유예	무 죄	소년부 송치	기 타
4,296	-	-	18 (0.4)	659 (15.3)	1,223 (28.5)	420 (9.8)	48 (1.1)	14 (0.3)	1,565 (36.4)	349 (8.1)

자료: 사법연감

<표 9> 소년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현황(2005년)

계	법원송치	검사송치	경찰송치	이송	통고
24,353	1,637 (6.7)	16,607 (68.2)	6,060 (24.9)	42 (0.2)	7 (0.0)

자료: 사법연감

<표 10> 소년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주요죄명별 현황(2005년)

계	폭처 법	절 도	강 도	폭 행	상 해	성 폭력	특가 법	유해 화학	교통 법	도교 법	기 타
24,353	7,134 (29.3)	10,588 (43.5)	575 (2.4)	98 (0.4)	328 (1.3)	544 (2.2)	674 (2.8)	78 (0.3)	460 (1.9)	185 (0.8)	2,189 (9.0)

자료: 사법연감

<표 11> 소년법원의 소년보호사건의 처분현황(2005년)

계	보호처분								불 처분	불 개시	기타
	소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24,303	21,135	4,166	6,906	7,479	577	5	1,053	949	1,228	1,758	182

자료: 사법연감

<표 12> 소년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처분현황(2005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계	2호	3호	계	2호	3호
5,325	1,800	3,525	3,295	1,508	1,787

자료: 법무부 보호국 통계, 범죄백서

2005년의 경우 검찰이 처리한 67,478명의 소년 중 구약식은 8,579명(12.7%)으로 소년부송치 13,555명(20.1%)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다(표 5). 또한 형사법원의 제1심 공판사건에서 20세 미만의 소년 4,296명 중 410명(9.8%)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생각건대 어차피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통고처분도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도 배제되고 있다(경범죄처벌법 제5조 제3항, 소년법 제62조). 또한 18세-19세의 소년에게 약식절차·즉결절차를 거쳐 벌금·과료 또는 구류의 형을 부과하는 것은 반사회성의 제거나 건전육성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²⁸⁾ 이에 비추어 현행 소년법에 어긋나는 실무관

28)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리기준: 소년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를 중심으로”, 이한교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0, 516면.

행을 차제에 명확하게 시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처분의 다양화·실질화가 추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경미한 소년사건에 대하여 어설픈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여지를 두는 것보다 보호사건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2. 검사의 처분전조사와 조건부기소유예

법무부안은 검사에 의한 처분전조사와 조건부기소유예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소년법에 도입하고 있다(제49조의2, 제49조의3). 처분전조사는 검사가 선의권을 행사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경중에 치우쳐 요보호성의 감안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등에 조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²⁹⁾는 1981년 소년선도보호지침(법무부령)에 따라 도입·시행되고 1991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었던 것을 위헌시비를 피하고자 소년법에 명문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앞의 <표 5>, <표 6>을 보면, 2005년의 경우 검찰이 67,478명의 소년범 가운데 5,511명(8.1%)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기소유예된 33,683명(49.9%)의 16.3%에 해당한다.

생각건대 처분전조사와 조건부기소유예 그 자체는 다이버전의 취지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만, 검사선의주의의 유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이념에 철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검사가 조사를 이유로 소년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기소유예를 취소할 경우 처음부터 보호사건으로 소년법원에 송치했을 경우에 비하여 매우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록 법률의 근거에 더하여 소년의 동의는 물론 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하면서 사실상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제12조 제1항)과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1항)에 위배하는 측면을 지워버릴 수 없다. 아무래도 법원선의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검사에 의한 다이버전의 통로는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³⁰⁾ 여기에

29) 오영근/최병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서 검사가 소년사건을 조건부기소유예로 처리할 경우 조건의 부과와 실시
에 대하여는 법원의 사전 또는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3. 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

법무부안은 소년보호절차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시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장애,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조의 2). 법원안은 국선보조인 선정사유는 거의 동일하나 국선보조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다.

생각건대 소년보호절차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은 매우 바람직하다. 소년보호절차에서 국선사상에 입각하여 소년법원 판사나 조사가 소년을 위하여 일종의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소년의 권리와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³¹⁾ 왜냐하면 소년사범, 특히 소년심판이 국선사상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것은 분명하나 본질적으로 형벌권의 실현인 형사사범의 특수형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절차에서 소년분류심사원위탁이나 소년원송치가 형사절차의 구속이나 자유형에 다름없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나아가 보호사건이라 해도 얼마든지 형사사건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소년법원의 심리와 결정의 적정을 보장함으로써 소년심판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하여도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³²⁾ 더욱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도 헌법상의 평등원칙(제11조 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제12조 제1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변호의 대상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

30) 경찰에 의한 다이버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는 한숙희, “소년법 개정안 의견서”,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51-52면.

31) 미국의 사법행정연구원(IJA)과 변호사회(ABA)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소년사범준칙에 따르면 소년심판절차에서 변호사는 법원의 협력자의 역할과 소년의 보호자(guardian) 및 옹호자(advocate)의 역할을 수행할 임무를 가진다. Bynum/Thompson, Juvenile Delinquency: A Sociological Approach, 2ed., Boston: Allyn & Bacon, 1992, 386-387면.

32) 유진식, 소년법, 육법사, 1982, 177면.

죄가 문제되는 경우도 필요적 선정사유로 해야 하고, 소년이 범죄성립을 다투는 경우, 보호자의 부재·학대·방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분의 필요를 이유로 검사나 형사법원에 송치할 경우를 임의적 선정사유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년보호절차에서 국선보조인의 자격³³⁾은 변호사에 한하지 않고 소년비행에 관한 지식과 소년선도에 관한 열의를 갖춘 소년문제의 전문가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³⁴⁾

4. 소년심판 항고심의 파기자판

법무부안은 소년보호절차의 항고심에서 파기자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5조 제2항). 법원안도 동일하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항고법원이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1심에 다시 환송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으로 말미암아 소년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³⁵⁾

생각건대 보호처분이나 그 변경에 법령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처분부당이 인정되어 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굳이 소년법원에 보내지 않고 항고심에서 직접 불처분·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속한 처리로 대상소년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IV. 보호처분의 강화

1. 보호처분의 다양화

법무부안은 보호관찰의 부수처분인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독립처

33) 캐나다의 경우 소년을 위한 국선변호인은 반드시 변호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성인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캐나다 소년법 제11조). Platt, Young Offenders Law in Canada, §13.13-§13.35.

34) 최병각, “소년사법과 변호인·보조인”, 박재윤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2, 463-464면.

35)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백서, 161면.

분으로 변경하고 1월이내 소년원송치를 신설하면서 각각의 보호처분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보호관찰의 부수처분으로 대안교육·상담교육·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2조, 제32조의2). 또한 사회봉사명령은 현행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수강명령은 현행 16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하고, 단기보호관찰은 현행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되, 소년원송치는 새로이 상한 2년을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4항, 제33조 제2항, 제33조 제6항). 법원안은 소년자원보호자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함과 아울러 그 위탁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은 10세 이상으로 하되 현행과 같이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하고, 단기보호관찰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면서 사회봉사와 수강의 상한도 현행 5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인상하고, 소년원 수용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보호처분의 다양화는 개개 소년의 특성에 따른 보호처분의 선택과 조합을 가능하게 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소년법원이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을 비롯한 소년보호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을 갖추어야만 보호처분의 집행 및 사후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보호자에 대한 교육명령

법무부안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제32조의2 제3항). 법원안도 동일하다.

생각건대 소년의 비행사실에서 확인되는 보호자의 감호의무 불이행 내지 부적절한 감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과 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호처분의 실시와 보호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겠다. 법무부안에서 교육실시기관으로 예시되고 있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기관과 보호자가 더불어 소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끔 하는 적실한 보호자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3. 피해자를 위한 화해권고와 진술권

법무부안은 소년보호절차에 있어 피해자와의 화해권고와 피해자의 진술권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제25조의2, 제25조의3). 이는 회복적 사법의 강조에 부응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소년사법, 특히 소년보호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소년의 건전육성이 보다 상위의 이념임은 분명하다. 소년법원에서 조사 및 심리과정에 피해자를 소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술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이차적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심판대상인 소년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와의 화해권고의 결과가 보호처분의 종류·정도의 결정뿐만 아니라 불처분의 결정에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³⁶⁾

4. 시설이탈에 따른 처분기간정지

법무부안은 보호처분을 받아 복지시설, 의료시설 또는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이 시설을 이탈하면 처분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제33조 제7항). 법원안도 동일하다.³⁷⁾

생각건대 시설내처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처분기간의 정지는 적절하다.

V. 맺음말

소년사법의 인적·물적 자원은 소년법 제정 당시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증강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역량발휘가 제대로

36) 화해권고를 소년사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도입하자는 견해는 박미숙, “법무부 소년법 개정안 토론문”, 63면; 강경래, 소년법개정안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 소년법학회 2007년 동계학술회의 자료, 2007, 2.23., 15-16면.

37) 나아가 시설에서 이탈한 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체포제도(지명수배, 체포영장 발부 등)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은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백서, 160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정 부분 왜곡된 모습을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소년사건의 처리권한을 둘러싸고 특히 선의권을 두고 끊임없이 논박이 이어지고 있다.³⁸⁾ 선의권, 나아가 소년절차의 일원화 문제야말로 소년법개정의 근간이 되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다. 그것은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만으로는 문제해결에 그다지 기여할 수 없다는 인식과 소년법 제정후 50년간 운영되어 온 검사선 의주의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와 법원선의주의 또는 소년절차일원화로의 변혁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이 매우 어렵다는 사정에서 비롯하였다. 앞으로의 좀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현 시점에서 소년법개정으로 표출되고 있는 소년비행과 소년사법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나름의 성취를 이룰 수 있으려면 이 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소년법 적용대상의 변경,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혁, 보호처분의 강화 등의 쟁점에 대한 유기적·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나아가 우리 소년법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도 무엇보다 먼저 소년사법을 건전하게 육성시키는 것에 모두가 뜻과 힘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8, 42-61면.
- 2) 김기두,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제14권 제1호, 1973, 7면; 정영석, “소년보호와 소년법”, 사법행정, 1970.12., 28-32면, 1971.1., 27-30면.
- 3)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I):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백서, 2005.6.

38) 최근의 논의로는 도중진/류병관, “소년법상 선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2006, 247-282면; 서인선, “법원선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의 관계: 최근 소년사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2006/1, 178-205면; 김성돈, “우리나라 소년법의 검사선의주의모델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88호, 2005/12, 189-210면.

- 4) 법무부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2007.4.20.
- 5) 원혜옥, “소년법개정안 개요”,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10면.
- 6) 최인섭/전영실/안경옥/한상훈, 청소년보호연령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16면.
- 7) 최병각, “소년감경의 적용요건과 소송법적 효과”, 형사법연구, 제12호, 463-484면.
- 8) 박미숙, “법무부 소년법개정안 토론회”,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65면.
- 9) 원혜옥, “법무부 소년법개정안의 개요”, 8-9면.
- 10) 박재윤, “비행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 현행 소년사법제도를 중심으로”,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제9집, 1991, 49면;
- 11) 김영란, “개정 소년법에 대한 일고”,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제7집, 1989, 236-237면;
- 12) 김기두, “소년법상의 제반 문제점과 개정방향”,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1985, 10-11면
- 13) 한상호, “현행 소년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논설집, 제5집, 1981, 266면
- 14) 김완섭, “소년법상의 문제점”, 사법연수원, 소년법에 관한 제문제, 법과연수자료, 1979, 515면.
- 15) 신순갑, “소년법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NGO 입장”,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43면.
- 16) 김석병, “비행·일탈청소년 통합 지지체제 구축”,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56면
- 17) 최종식, “소년법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소년법학회, 2007년 동계학술회의 자료, 2007.2.23., 15면.
- 18) 김용운, “소년법 개정안의 몇가지 쟁점에 대하여”,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74-76면.
- 19) 이수현,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상의 문제점과 대안”, 경북대, 법학논고, 제21집, 2004, 98면.
- 20) 강완구, “우리나라 소년심판제도상의 제문제”, 법원행정처, 가정법원사

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8집, 1983, 676면

- 21) 나채규, “소년법상 보호처분 활성화방안”,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제8집, 1990, 175면.
- 22) 나채규, “소년법상 보호처분 활성화 방안”,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제8집, 1990, 175-176면
- 2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행정 · 소년 · 비송, 1986, 244면
- 24) 이정구, “현행 소년법상 항고제도에 관한 고찰”,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1985, 201-202면
- 25) 유진식, 소년법, 육법사, 1982, 371면.
- 26)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224-226면,
- 27) 關力(編), 非行少年はこう扱われる, 有信堂, 1991, 84면.
- 28) 법무부,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검토의견”,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86-87면.
- 29)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I):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백서, 2005.6., 153면.
- 30) 심현섭, “형법과 일반조항”, 손해목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3, 579-597면.
- 31) 김완섭, “소년법상의 문제점”, 사법연수원, 소년법에 관한 제문제, 법관연수자료, 1979, 517면.
- 32) Bartollas, Juvenile Delinquency, 2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9-10면.
- 33) 이진국, “소년보호대상의 범위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2006, 108면
- 34) 오영근,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 · 청소년 인권보호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02, 10면
- 35) 점승헌, “우범소년의 우범사유와 우범성”, 소년법연구, 제1호, 2002, 328-329면.
- 36) 최종식, “우범규정의 재해석”, 소년법연구, 제2호, 2007, 92-93면.
- 37)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리기준: 소년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를 중심으로”, 이한교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0, 516면.
- 38) 오영근/최병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4.

- 39) 한숙희, “소년법 개정안 의견서”, 소년법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 51-52면.
- 40) Bynum/Thompson, Juvenile Delinquency: A Sociological Approach, 2ed., Boston: Allyn & Bacon, 1992, 386-387면.
- 41) 유진식, 소년법, 육법사, 1982, 177면.
- 33) Platt, Young Offenders Law in Canada, §13.13-§13.35.
- 34) 최병각, “소년사법과 변호인·보조인”, 박재윤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2, 463-464면.
- 35)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백서, 161면.
- 36) 박미숙, “법무부 소년법개정안 토론문”, 63면
- 37) 강경래, 소년법개정안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 소년법학회 2007년 동계 학술회의 자료, 2007,2.23., 15-16면.
- 38) 도중진/류병관, “소년법상 선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2006, 247-282면
- 39) 서인선, “법원선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의 관계: 최근 소년사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2006/1, 178-205면
- 40) 김성돈, “우리나라 소년법의 검사선의주의모델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88호, 2005/12, 189-210면.

Die Reform des Jugendrechts und die gesunde Förderung der Jugendrechtspflege

Byounggak Choi*

Das koreanische Jugendgesetz wurde im Jahr 1958 erst verschafft und hat sich seitdem drei mal geändert. Inzwischen sind die Jugendrechtspflege und die personale und institutionelle Infrastrukturen allmählich erweitert und verstärkt. Wegen einer dualistische Strukturform in Schutzmassnahme und Kriminalmassnahme ist eine angemessene und effektive Handhabung des Jugendgesetzes wird bis heute nur wenig Erfolg erbracht. Insbesondere ist das Thema “Vorabentscheidung” im Hinblick auf die Massnahmebefugnis gegen jugendliche Delinquenten in der Wissenschaft und Praxis eine heftige Debatte hervorgerufen. Um die jugendliche Delinquenz möglichst zu reduzieren und die Jugendrechtspflege angemessen zu restrukturieren, sollte die folgenden Reformen durchgeführt werden: die Änderung des personellen Anwendungsbereich des Jugendgesetzes, die Reform des geltenden Jugendschutzverfahren und Jugendstrafverfahren, die Verstärkung der Schutzmassnahme usf. Durch diese Reform kann man die “gesunde Förderung eines Jugendlichen” als Ziel des Jugendgesetzes erreichen.

주제어 : 소년법, 소년법개정, 소년사법, 소년보호사건

Keywords : Jugendrecht, Jugendrechtsreform, Jugendrechtspflege,
Schutzmassnahme

* Professor an der Universität Dong-A in Busan, Dr. iur.